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山林組合法中 改正法律案 檢討(完)

-협동조합원리 충실히 수용안돼 유감-

유 병 일 / 임업연구관(농박)

〈전호에서 계속〉

셋째, 이용고배당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사업활동을 통한 잉여금의 배당에 대한 원칙으로 이는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와 함께 1인1표 원칙이 협동조합 평등사상의 산물임에 반하여 이용고배당의 원칙은 공정사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농협법, 축협법에서는 각각 67조와 61조에서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키고 있지만 개정산림조합법 안에서는 이용고배당에 관한 조항이 생략되어 있어 이역시 협동조합법의 기본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넷째, 출자에 의한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조합원의 인격에 부수되는 지위로 간주하고 있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는 대신 이자만을 지급하되 이용배당보다 낮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수축협법이 모두 출자에 관한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정 임협법에서는 35조2에서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존치시킴으로서 기본원칙에 충실치 못한 법조문이 되었으며, 개정 산림조합법이 사업으로 새롭게 채택하고 있는 상호금융사업도 출자금을 기본자산으로 하여야 함을 감안할때 조합내 자금조성노력보다는 외부자금차입 등에 의한 외부의존도가 커져 산림조합 구성원의 협동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소홀할 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관보다는 개정산림조합법률안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5. 농수축협법의 출자관련 조항

구분	조항	내 용
임협(안)	제35조2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농협	제23조	조합원은 출자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축협	제20조	조합원은 출자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수협	제27조	조합원은 출자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섯째, 교육촉진의 원칙은 개정법률안 63조에서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 및 직원의 교육·연수사업을 실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농수축협이 준수하고 있는 원칙에 충실하였다.

여섯째, 조합간 협동의 원칙은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계속 발전됨에 따라 협동조

합운동이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된 원칙인데 협동조합도 그 내부적 협동의 단계를 넘어 지방적, 지역적, 전세계적으로 각급 협동조합끼리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따라 농수축협이 모두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외국의 관련협동조합과 협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림조합도 진정한 협동조합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내외간의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ICA에도 가입하여 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충실하여야만 할 것이다.

표6. 한국 임업협동조합안과 일본 삼림조합법의 비교

原 則	한 국	일 본
1. 組合의 公開	자격조항만 규정(34조)	자격조항(27조)
	가입 탈퇴조항 없음	가입의 자유(35조)
		탈퇴의 자유(36조)
2. 民主的 運營	의결권 1인1표주의(37조)	의결권 및 선거권 1인1표주의(31조)
3. 剩餘金의 利用高 配當	출자조항 정관에서 명시	잉여금을 출자금액과 이용고에 따라 배당함(69조, 70조)
4. 出資에 의한 資本利子制限	출자조항 정관에서 명시	출자제도 있음(1인1구좌이상)(28조)
5. 敎育促進	교육제도 있음(63조)	교육제도 있음(9조)
6. 國內外 協同組合間의 協助		ICA가입
		필수조항중 1, 2, 3, 4조항 모두 만족 →완전한 협동조합

현재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임업분야의 협동조합으로는 일본과 북유럽 3개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협동조합원칙에 충실하며 한국의 협동조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 삼림조합과 우리나라의 개정 산림조합법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첫째, 자격조항 및 가입탈퇴 조항이 분명하며,

둘째, 의결권과 선거권이 1인 1표주의로 명시되어 있고,

셋째, 잉여금의 배당이 명문화되 있으며, 출자제도도 1인 1구좌 이상으로 명문화되 있어 6대원칙중 4대 필수원칙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어 한국의 개정 산림조합법률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개정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배타적인 협동조합으로 탈바꿈(개정법률안의 3조)하려는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과거부터의 삼림조합법이 1951년 협동조합체제로 완전히 개편된 후에도 협동조합법란 용어만 사용안했을 뿐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민주적인 협동조합형태로 개편되었다는 사실은 어느편인 임업과 산주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인가를 산림소유자, 임업경영자를 포함한 업계, 학계, 행정계 모두 깊이 생각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림조합은 140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산주만 계산하여 744천명의 산림계원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규모나 조합원 대상수에 있어서는 수협(73개 조합, 150천명 조합원)과 축협(168개 조합, 224천명 조합원)에 비하여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산주수(약

200만명)를 고려한다면 발전가능성은 대단히 크며, 임업분야의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은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하여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번의 개정법률안은 그동안에 임업계가 갈망하여 오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보다 협동조합원칙에 충실한 조합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 경제체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들 조직을 설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것이 일반적인 양태임을 고려한다면 임업의 경우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나,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원초기단계에서부터 정부가 협동조합 운영에 관련하여 손을 떼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적인 사실을 명심하여야만 할것이며, 또한 농수축협이 모두 사회 대변혁기에 개편 내지 조직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호 正誤表

농수축협법의 조합원의 자격·가입 · 탈퇴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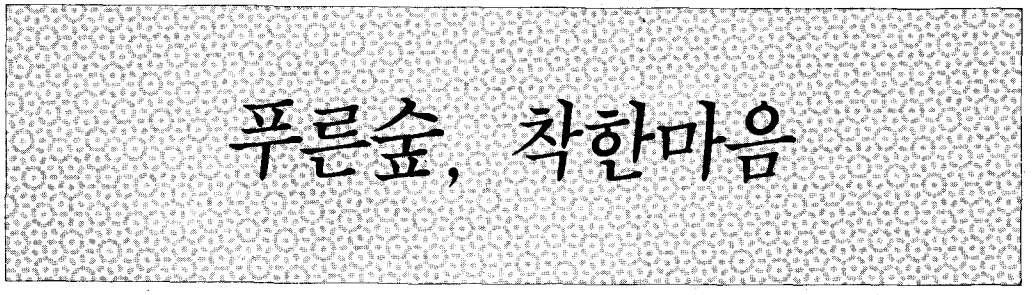
구 분	조합원의 자격	가 입	(誤) 탈 퇴	(正) 탈 퇴
임협 (안)	제34조	–	– 제31조	–
농협	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축협	제18조	제26조		제27조
수협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6조 제37조